장애학생지원 운영 규정

한국항공대학교

개정 기록표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1	2018.3.1		16		
2			17		
3			18		
4			19		
5			20		
6			21		
7			22		
8			23		
9			24		
10			25		
11			26		
12			27		
13			28		
14			29		
15			30		

장애학생지원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우리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학업 및 학생활동 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장애학생"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 전형으로 입학하였거나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재학생을 말한다.

제 2 장 장애학생지원 서비스

제3조 (원칙) 장애학생에게 교육, 수업, 학내 활동 및 진로 지도 등에 있어 일반학생과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4조 (기능)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신입생 입학 면접 전형 지원, 학생생활상담소의 심리검사 및 개인상담
2.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진행
3. 신입생 및 재학생 수강신청 도움
4. 신입생 및 재학생 휠체어 이용학생 수강과목 강의실 조정
5. 출석부 장애 영역 표시
6. 장애 영역에 따른 도우미 섭외 지원
7. 멘토링 제도 운영(학습 및 교내 생활 지원 도우미 지원)
8. 간담회(년 1회~ 2회) 진행
9. 장학금 지급 추천
10. 장학금 신청서 등 학사 행정 서류접수 도움
11. 교내 학습 활동용 장비 지원 및 대여
12. 진로상담, 취업준비 지원 등의 진로지원
13. 장애학생지원 위원회 관리
14. 기숙사, 학과활동 등의 대학생활 지원
15. 대학편의시설 지원
16. 기타 장애학생을 위한 제반 업무

제5조 (전용시설) 장애학생의 원활한 학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전용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1. 장애학생 전용 주차장
2. 장애학생 전용 화장실

3. 기타 장애학생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제 3 장 장애학생지원 위원회

제6조 (구성) ① 장애학생 지원정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학생처장, 생활관장, 장애학생지원센터(팀)장, 생활상담사, 학생지원팀장, 교무팀장, 시설팀장, 해당 학부(과)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제7조 (기능) 위원회는 장애학생 학업 및 복지 지원이라는 큰 목적 아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학생의 교육ㆍ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교내 장애학생 차별 피해 사례 신고 접수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학사지도, 대학생활지도, 진로취업지도 등 장애학생 지도에 필요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 (회의) ①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8.3.1>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는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담당한다.

제10조 (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11조 (세부 사항)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6월 13일부터 시행하되, 201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